

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자원화 1차시설 용도폐지의 건

의안 번호	754
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2010. 3. 10

제출자 : 중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자원화 1차시설의 민자운영(BTO) 기간 종료와 시설물 인수 후 시설운영 전반을 분석한 결과, 보수하여 가동하는 것 보단 폐쇄하는 것이 타당하여 공공시설 용도폐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 39조,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골자

- 1차 시설은 2001년도부터 자원화 시설로 운영하였으나,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검사 규정이 신설되어 자원화 시설 설치검사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2006년도부터 감량화 시설로 운영하였으며,
- 감량화 시설 운영에 따라 2009년도 감사원 감사시 재활용율 저조로 지적을 받았으며, 감량화 시설 운영도 현재로는 건조시설 등 부적합으로 운영할 수 없음
 - 감량화 시설 운영 사유 : 발효조 용량 미달(65.4m³ ⇒ 150m³) 및 후부숙조 시설 없음
- 1차시설 보강시 예산 과다 소요 : 20억 이상 소요 예측
 - 시설보강 내역 : 발효조 용량 확대, 후부숙조 설치, 건조기 보수 등 시설 노후에 따른 전체적으로 시설 진단 및 보수 필요
- 울산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1일 발생량은 265톤이며 공공시설인 용연시설(SBK) 180톤, 중구 2차시설 53톤, 성암소각장 32톤, 총 265톤으로 중구 1차시설 가동시에도 반입할 물량이 없으므로 시설 폐쇄를 결정코자 함

※ 2010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물량 배정 (톤/일)

※ 시 환경자원과 - 9242(2009.12.29) : 2010년 음식물쓰레기 처리물량 배정

시 설 별	일평균	구·군 배정 물량					
		계	중구	남구	동구	북구	울주군
계	265	265	53	90	44	40	38
용연시설(SBK)	180	180		73	39	35	33
중구 2차시설	53	53	53				
시 소각장	32	32		17	5	5	5

3. 용도폐지 대상 공공시설 현황

- 시 설 명 :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 자원화 1차 시설
- 위 치 : 울산광역시 남구 성암동 150-1(환경자원사업소 내)
- 사 업 비 : 사 업 비 : 2,253백만원(국 630, 시 735, 민 888)
- 면 적 : 부지 3,229㎡, 건물 907㎡
- 준공일자 : 2001년 8월 30일
- 시설규모 및 처리방식 : 50톤/일, 퇴비화
- 민자운영기간 : 2001. 8. 30 ~ 2009. 12. 4(처리물량 144,179톤 처리)

※ 운 영 자 : 울경환경(주) 대표이사 이건축

4. 용도폐지 후 공공시설 재산 조치

- 토지(시유지), 건물(중구 소유) : 2차시설 부속시설로 활용
- 기계설비 : 불용결정하여 매각

5. 관련법규

- 지방자치법 제39조, 같은법시행령 제36조

의안심사보고서

(의안번호 754)

1. 의안명 :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자원화 1차시설 용도폐지의 건

2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0. 3. 10(수)
- 나.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 : 2010. 3. 11(목)
- 라. 위원회 심사 : 2010. 3. 19(금)

3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건설도시국장)

가. 제안이유

-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자원화 1차시설의 민자운영(BTO) 기간 종료와 시설물 인수 후 시설운영 전반을 분석한 결과, 보수하여 가동하는 것 보단 폐쇄하는 것이 타당하여, 공공시설 용도폐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,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중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1차시설은 2001년도부터 자원화 시설로 운영하였으나,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검사 규정이 신설되어 자원화 시설 설치검사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2006년도부터 감량화 시설로 운영하였으며,
- 감량화 시설 운영에 따라 2009년도 감사원 감사시 재활용율 저조로 지적을 받았으며, 감량화 시설 운영도 현재로는 건조시설 등 부적합으로 운영할 수 없음
 - 감량화시설 운영사유 : 발효조 용량미달(65.4m³⇒150m³) 및 후부숙조 시설 없음
- 1차시설 보강시 예산 과다 소요 : 20억 이상 소요 예측

- 시설보강 내역 : 발효조 용량 확대, 후부숙조 설치, 건조기 보수 등 시설 노후에 따른 전체적으로 시설 진단 및 보수 필요

○ 울산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1일 발생량은 265톤이며 공공시설인 용연시설(SBK) 180톤, 중구 2차시설 53톤, 성암소각장 32톤, 총 265톤 으로 중구 1차시설 가동시에도 반입할 물량이 없으므로 시설 폐쇄를 결정코자 함

※ 용도폐지 대상 공공시설 현황

- 시설명 :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 자원화 1차 시설
- 위치 : 울산광역시 남구 성암동 150-1(환경자원사업소 내)
- 사업비 : 사업비 : 2,253백만원(국 630, 시 735, 민 888)
- 면적 : 부지 3,229㎡, 건물 907㎡
- 준공일자 : 2001년 8월 30일
- 시설규모 및 처리방식 : 50톤/일, 퇴비화
- 민자운영기간 : 2001. 8. 30 ~ 2009. 12. 4(처리물량 144,179톤 처리)
- 운영자 : 울경환경(주) 대표이사 이건축

4. 근거법규

○ 「지방자치법 제39조, 같은법 시행령 제36조」

5. 검토의견 (전문위원 성낙팔)

○ 본 공공시설 용도폐지의 건은 2001년도에 우리 중구에서 BTO(수익형 민자사업)사업으로 설치한 “음식물자원화 1차시설”이 민자운영기간 종료로 인수하였으나, 본 시설을 재가동시 시설노후로 보수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며 시에서 금년4월 완공예정으로 대규모 음식물 처리시설을 건설 중에 있어, 우리 구에서 본 시설 운영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 39조제1항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용도 폐지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

○ 공공시설의 용도폐지는 같은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

항 이므로 이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.

○ 본 공공시설의 용도폐지 주요 내용은

- 우리 중구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2001년 도에 남구 성암동 울산광역시 환경자원사업소 부지 내에 설치한 “중구 음식물 자원화 1차시설”의 민자운영기간이 2009. 12. 4일자로 종료되어 본 시설을 중구에서 인수 하였으나
- 본 시설을 재가동시 노후시설 보강비가 20억원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사항은 그간 운영해온 민자운영 업체에서도 보수비 과다로 노후시설을 보수하지 못하고 대체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하였다고 함
- 또한 울산광역시에서 시 관내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전량을 처리하기 위해 건설 중인 “용연 음식물처리 공공시설(SBK)”이 금년 4월 준공이 되면 우리 중구의 2차시설과 성암 소각장 시설 등으로도 시 관내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가 충분히 처리될 것임.

○ 따라서 우리 중구의 “음식물자원화 1차시설”은 공공시설 용도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○ 다만 본 시설 용도폐지 후 건물은 2차음식물 처리시설의 부속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며, 기계 설비는 불용결정 후 매각 처분 계획인 바 이에 대한 부속시설 세부 활용계획과 이러한 기계 설비의 수요처가 있는지 등 매각계획의 세부설명이 요구됨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